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과 서울광역자활센터(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는 50+세대의 앙코르카리어를 위한 일자리모델 발굴과 자활기업의 성장가능성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며, 양 기관의 정보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50+세대의 앙코르카리어를 위한 일자리모델 발굴과 자활기업의 성장가능성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50+자활기업펠로우십 협력 운영
- 50+세대 일자리모델 발굴 및 앙코르카리어 전환지원을 위한 협력
- 자활기업 성장가능성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연계
- 기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

제4조(비밀엄수)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6조(협약의 해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다. 다만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협약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7조(신의성실의 원칙) 협약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하며,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8일



대표이사 이 경희

이경희



센터장 정 찬 희

정찬희